

수원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나612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2. 12. 15.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1. 29. 선고 2021가단5770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안성시 D 대 1,914㎡ 중 183/3,474 지분에 관하여 2021. 2. 1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안성시 D 대 1,914㎡ 중 183/3,47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1. 2. 17. 접수 제77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안성시 D 대 1,914㎡ 중 183/2,895 지분에 관하여 2021. 2. 1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1. 2. 17. 접수 제77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취소를 구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의 날짜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피고의 관계 및 C의 상속분

1) 원고는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매입한 자산의 관리 및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의 채권자이다.

2) 안성시 D 대 1,9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83/579 지분을 소유하던 E은 1992. 6. 18.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처 M, 자녀들로 N, O, P, C, Q, 피고가 있었는데, 처 M이 2021. 2. 10. 이전 사망하여 그의 상속분을 6명 자녀들이 상속하였으므로 2021. 2. 10.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83/579 지분에 관한 C의 법정재산상속분은 1/6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이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아래와 같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할 때, C은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F과 C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대출거래약정

구분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주채무자	이율	비고
1	1998. 4. 2	100,000,000	F	편입이율 19% 연체이율 19%	연대보증인 C
2	1998. 5. 28	20,000,000		편입이율 19% 연체이율 19%	연대보증인 C
		120,000,000			

2) G은행의 채권은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전전 양도되었다.

순번	양도인	양수인	원인일자
1	G은행	(주) H	2004-11-04
2	(주) H	I (유)	2011-04-26
3	I(유)	(주) A	2019-01-25

3) 주식회사 H(이하, ‘H은행’이라고만 한다)은 F 과 C에 대하여 2005.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496123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6. 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41,509원 및 그 중 14,782,556원에 대하여 200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2005. 7. 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다. C의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

1)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액은 2021. 3. 29. 기준으로 합계 78,218,813원(= 미수원금 14,782,556원 + 지연손해금 63,436,257원)이고, C은 2021. 2. 10.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이다.

2) E이 1992. 6. 18. 사망하여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83/3,474 지분(= 망 E 소유 지분 183/579

÷ 6)을 상속받았으나 2021. 2. 10. 유일한 재산인 위 지분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1. 2. 7. 접수 제7730호로 1992. 6.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7 내지 9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0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과 피고 사이에 2021. 2. 1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C의 상속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망 E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 183/579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E이 소유하던 지분에 관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각 1/6이므로 C의 상속지분인 183/3,474(= 183/579 ÷ 6) 지분에 관해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척기간의 도과

피고는 사해행위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척기간 5년의 기산일인 법률행위가 있는 날은 사해행위의 성립시점인바,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로 기재된 날짜가 아니라¹⁾, 피고와 C이 등기원인인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실제 체결한 날짜인 2021. 2. 10.에 성립하였다(갑 제20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다.

나. 사해의사 등의 부인

피고는 C의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역시 악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83/579 지분의 상속지분을 2021. 2. 10.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망 E이 사망하기 전부터 다른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83/579 지분에 관한 상속권을 미리 포기하였다는 취지인 을 제7호증(망 E과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양수금채권의 시효완성 항변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확정일자로부터 10년이 도과한 이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나,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은행은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9. 1. 30. 수원지방법원 2009타채178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2. 3.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I 유한회사는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2. 1.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채4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1. 5.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압류에 의해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83/3,474 지분에 관하여 2021. 2. 1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83/3,47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1. 2. 17. 접수 제77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 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정희일, 판사 오연수, 판사 류창성

1)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로 기재된 ‘1992. 6. 18.’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등기원인 일자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기재한다는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75호, 시행 2019. 6. 21.) 제2의 나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이다.